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의 통근을 목적으로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의 운행이 출퇴근 시간대에만 이루어지고, 기점과 종점이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도권 내 지역에 위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수도권 내 교통수단이 부족한 일부 지역의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의 통근을 위한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29. ~ 5. 8., 9. 4. ~ 9. 9.) 결과, 특

기할 사항 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 1)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3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통학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나. 회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 등의 관리기관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의 통근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점에서의 출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일 것

나.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을 것

다. 기점과 종점은 서로 다른 시·도에 위치할 것

라. 중간 경유지를 두는 경우 기점 또는 종점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에 총 2개 이하로 둘 것

마. 기점, 종점 및 중간 경유지는 모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수도권 내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

려하여 고시하는 지역 내에 위치할 것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	가. ----- ----- ----- ----- ----- ----- <단서 삭제>

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
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
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
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지방자치단
체와 그 출연기관·연구
기관 등 공법인

<삭 제>

2) 회사, 「초·중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
이집, 「학원의 설립·운
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
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삭 제>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 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등의 관리기관

나. ~ 라. (생략)

<신설>

<삭제>

나. ~ 라.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3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통학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등 공법인

나. 회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
는 산업단지등의 관리기관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

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거

주자만의 통근을 목적으로 자

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로서 다

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

우

가. 기점에서의 출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

지 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일 것

나.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에는 운행하지 않을 것

다. 중간 경유지를 두는 경우

기점 또는 종점으로부터 3

킬로미터 이내에 총 2개

이하로 둘 것

라. 기점, 종점 및 중간 경유

지는 모두 「대도시권 광

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

	<u>법 시행령」 별표 1에 따</u> <u>른 수도권 내의 지역으로</u> <u>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u> <u>수단 이용의 편의성 및 교</u> <u>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u> <u>고시하는 지역 내에 위치</u> <u>할 것</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30